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035
- 발 의 자 : 맹진영 의원 외 12명
- 발 의 일 : 2016년 2월 18일
- 회 부 일 : 2016년 2월 22일

## 2. 제안이유

- 공공·민간부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위한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되고 있는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개선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추구를 건의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 할 것을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기타사항 : 없 음.

##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안전행정위원장

나. 정 부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 6. 검토의견

- 본 건의안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준수 현황,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자료요구 검사 및 징계권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임.
- 최근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 일부 민간 회사 및 포털업체에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도별 개인정보침해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침해 수준이 심각한 실정으로,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접수 현황〉

(단위 : 건)

년 도	2010	2011	2012	2013
신 고	1,188	2,556	2,058	2,347
상 담	53,044	119,659	164,743	175,389
합 계	54,832	122,215	166,801	177,736

※ 「2013년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안전행정부

- 서울시의 경우에도 상위법(개인정보 보호법)상 명시적인 근거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확인 못하는 상황임.

- 다만, 상위법(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서는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된 사무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원칙	주요내용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한다.
정보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범위가 부합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완전하게 갱신되어야 한다.
목적명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안전성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조직적·기술적 안전조치 확보해야 한다.
공개성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있어 일반적인 공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참가의 원칙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 개선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상위법(개인정보 보호법)에 미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 권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